

ISPS-Code와 관련한 해상테러 대응 대책

김 승 수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제 1 장 서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여객기와 연쇄충돌하며 붕괴되는 모습이 TV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이와같이 최근의 테러 상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 즉 상상을 초월 하는 테러수법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도처에서는 스페인의 열차테러(3.11), 러시아의 학교테러(9.1) 등 크고 작은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차량을 이용하는 자살폭탄 테러에서 선박과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까지 동원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테러로 무고한 생명을 잃었고, 우리 도 이러한 테러로부터 안전하다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테러라는 용어는 프랑스혁명 당시 공화파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건파를 무자비하게 처형했던 공포정치(Reign of terror)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테러」에 대한 정의는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동지역의 테러범의 특징은 광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의 국가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국가), 자신이 속하는 조직의 대의명분과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자살폭탄 테러가 만연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자살테러는 임무수행의 결과일 뿐, 무고한 시민이 죽는데 대해 전혀 개이치 않는 실정이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바칠 각오로 오직 정치적, 종교적 신념만을 가지고 자기가 충성해야 할 대상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성하면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범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각 국의 보안당국에서는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테러조직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테러리스트 명단을 작성하여 공항만의 출입국 관리시에 특별관리하고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해상테러는 육상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고 발생 우려도 낮다는 인식으로 공항이나 열차, 육상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테러대비태세가 미흡했었다. 따라서 IMO에서는 ISPS-Code를 발효시켜 선박과 항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만당국에서는 해상테러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항만과 선박에 대한 보안대책과 해상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테러와 관련한 정보 개요

제1절 최근에 입수한 테러정보

최근 우리나라 사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이후 알-카에다가 직접 한국을 테러대상으로 거명 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정부기관에서는 "국내외에서 우리 교민과 시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라는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중동 최대 이슬람 운동단체가 미국과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를 겨냥한 저항을 강화하라는 발표를 하였고, 라마단 기간에 저항운동을 촉구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알 카에다에서는 충성 맹세를 하고 성스러운 이번 달의 순교를 기대한다는 등의 성명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 입수된 우리나라와 관련한 주요 테러첩보 내용은 알 카에다의 제2인자인 알 자와히리가 아랍계 위성방송 알 자지라 TV방송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며 한국을 테러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을 방송했었고(10월 1일).

'하무드 알 마스리'라는 이슬람 단체가 한국 정부가 사이툰 부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한국군과 한국내 시설물을 공격

하겠다고 경고(10월 10일)하였으며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을 7일 안에 철수하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성명이 이슬람 웹사이트에서 발견(10월 19일)된 바 있다.

제2절 테러 가능성이 큰 이슬람 테러조직

최근 국내 민간테러연구소가 분석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군 및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큰 이슬람 테러조직은 10여개의 무장단체가 위협적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현재 60여개의 무장 저항세력이 활동 중이나 대부분 10여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으로서 대규모 조직 밑에서 활동하는 하위 조직으로 한국이나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사이툰 부대, 한국 교민 등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은 안사르 알이슬람, 검은 깃발, 일신과 성전 등 10여개 조직으로 이라크에서의 외국군 축출, 이슬람 원리주의 표방, 인력과 장비면에서 공격능력 확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위협적이라 보고 있다.

『안사르 알이슬람』은 알카에다와 동맹관계를 맺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알카에다 요원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조직이며 「검은 깃발」은 이미 한국군과 한국인에 대한 협박 비디오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일신과 성전」은 김선일씨를 납치, 살해한 조직으로서 1만명 정도의 무장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알마흐디 군」 「능동적 종교회의」 알사드르 직계 단체 등 3개 조직과 연합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이라크 해방 민족 전선』은 이라크가 함락된 이후 10여 개 저항조직 연합체로 결성되었으며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과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알아우다(Al-Awda)」도 전직 이라크 정보부 요원, 전직 군인, 바트당 중간 간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술, 티크리트 등 이라크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외 「이라크 해방군」과 「이맘 알리 빈 아비-타레브 지하드(성전)여단」, 「각성과 성전」, 「모하메드의 군」 등이 매우 공격적인 조직이다.

"동남아에서는 알카에다와 깊숙이 연결된 「아브사에프 그룹」과 「제마 이슬라미아」 등 두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마 이슬라미아」는 이미 한국에 전초기지를 두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절 해상테러와 관련한 정보

최근 알 카에다 산하 「이라크 이슬람군 총본부」가 "미국에 전략물자를 운송해주는 회사는 공격 목표" 라면서 우리나라 해운을 비롯한 세계 9개 해운회사에 대한 공격을 공개 선언(7.3)한바 있으며 이라크 남부 원유터미널의 소형선박 자살폭탄 테러 발생(4.24),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아」의 한국·일본·싱가폴의 항만 공격기도 첨보가 입수(9.16)되었으며 또한 이슬람 테러세력이 폭탄을 적재한 선단(floating bomb)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뒤 남은 세력이 동남아 지역으로 대거 잠입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아체(Aceh) 분리독립운동」, 필리핀의 「모로(Moro) 이슬람해방전선」 등도 테러세력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테러집단이 말라카해역에서 해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지난 '폭발력' 때문이다. 길이가 900km에 달하는 이 해역은 전세계 원유공급선의 50%, 동아시아 지역으로 공급되는 원유-LPG-LNG의 90%가 이곳을 통과한다.

따라서 테러세력이 폭탄을 장착한 소형보트로 유조선을 폭파하여 대량 해양오염사태가 발생하거나, 테러로 인한 해협이 차단, 봉쇄될 경우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 3 장 ISPS Code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제1절 ISPS code의 제정 배경

해상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9.11 테러사건 발생이전에는 「해상에 있어서의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해 왔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적문제 대응」에 대하여 대책을 강화해 왔으나 2001년 「9. 11 테러사건」 2개월 후에 개최된 IMO총회에서는 테러에 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해상에 있어서의 테러대책이 주요의제로 채택되어 해상에서의 테러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총회에서는 사무국에서 제안한 「여객 및 승선원, 선박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테러활동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절차의 개선」이 의결되었고, 개발도상국의 해상테러 대책 강화를 위해서 150만파운드의 기술협력지원도 합의되었다.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IMO의 관련위원회·소위원회에 있어서의 종래의 해상보

안관계 IMO결의나 회람문서의 개선 및 보안강화조치의 시급한 검토

·해상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진압에 관한 조약(1988년 IMO로마조약) 미수락국에 의한 동조약의정서 수락 검토

·각국의 당면한 해상테러대책 강화

·항만에 있어서의 보안대책강화를 위한 IMO에 의한 기술 협력 실시

이후 2002년 2월에 개최된 제75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해상보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동년 9월까지 선박안전위협 테러행위 방지대책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여 「국제해상보안규칙(안)」을 마련하여 기존 「SOLAS 제5장 및 11-1장(해상안전 특별조치)」개정하고 SOLAS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를 신설, 2002년 12월 12일 IMO외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13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여 SOLAS 개정안 및 ISPS Code제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은 타국의 입항선박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국 및 항만국 정부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선박은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소지하고 운항, ②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선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500톤 이상 화물선은 의무적으로 선박보안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 SSAS)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선박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수신을 위한 육상기지국 설치와 피해선박의 연안국에 신속한 전파를 위한 국가별 책임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ISPS Code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상선박은 총425척으로 선종별로는 여객선 10, 유조선 123, 컨테이너 40, 기타 화물선252척이며 이중 70척이 SSAS 경보장치를 이미 설치하였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 선박이 출입항하는 항만 및 관련시설로서 국내에는 28개의 무역항 및 123개의 관련시설이 지정되어 있다.

제2절 항만·선박보안에 대한 국제적 추세 및 국내 실태

일본 및 미국에 대한 ISPS Code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제정동향 및 관련 해상치안기관의 항만보안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

일본은 금년 4월 13일 「국제항해선박 및 국제항만시설

보안확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1호)」을 제정하여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의무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박보안정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여 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일국의 항구와 타국의 항구간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이 적용대상이며 어선이나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은 제외됨

나. 국제항해선박 의무사항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승선자의 출입관리, 화물의 취급관리, 선박내외 감시 등 보안조치, 선박경보장치 설치, 보안관리자 선임, 보안규정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제항만시설 및 의무사항

국제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안벽이나 정박지를 말하며 항만시설로의 출입관리, 화물의 취급관리, 선박내외의 감시 등 보안조치와 펜스 조명 등 보안설비 설치, 보안관리자 선임, 보안규정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항해선박의 입항에 관계되는 규제로서 일본이외의 지역 항구로부터 일본의 항구로 입항하려하는 모든 선박은 국제항해선박 여부를 불문하고 입항 24시간 전까지 승선원 인적사항, 적하물, 전 출항지 등 선박보안정보를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해상보안청 장관(해상보안부서)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ISPS Code와 상관없이 입항선박 통제와 관련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이 지난 6. 14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① 각료회의에서 정하는 특정외국국적을 가지는 선박, ② 각료회의에서 정하는 일자 이후에 특정의 외국에 기항한 선박, ③ 특정외국에 기항한 것으로 분류되는 선박, ④ 기타 특정국의 타국적 임대선박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각료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결정되면 일정기간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9.11테러 참사를 겪은 미국은 자국의 해상보안제도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해사보안법」이나 「적하물 검색시스템」 등에 자국기준을 타국에까지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가. 해사보안법(Maritime Transport Security Act, MTS)

2002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모든 국내선박과 외국적

선박 100톤 이상을 대상으로 항만 및 선박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에 화물을 수출하는 외국항만에 대해서도 테러방지 를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7월 미국 연안경비 대(U.S. Coast Guard, USCG) 소속 항만보안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부산·인천·울산·평택·군산 등 5개항의 보안상태를 시찰하였다.

MTSA의 외국항만에 대한 보안평가 기준을 보면 ① 컨테이너 화물과 기타 일반화물 그리고 수하물에 대한 검색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② 화물, 선박 및 부두지역 등 출입통제지역에 대한 보안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선박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가 시행되는지의 여부, ④ 적절한 보안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⑤ 외국항만의 보안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성, ⑥ 기타 미국에 대한 테러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나. 미 관세청 자동적하시스템 신고(Automated manifest system)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청의 자동적하시스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항만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세관원에게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효과 이외에, 외국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보안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미국행 화물을 미국항만에서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이중 검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선장에게 첫 위반시 5천달러, 이후 위반에 대하여는 매 위반시마다 1만달러 벌금과 함께 선박을 억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외국선원에 대한 입국통제조치

선박소유자가 당해 선박이 도착하기 96시간 전에 제출한 선원명부에 기재된 선원의 명단을 특별관리인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신원을 확인한 다음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경우 상륙을 금지하는 제도로 선박소유자는 미 이민귀화국의 신원확인 결과 '위험인물'로 간주되는 선원에 대하여는 보안요원을 고용하여 그 선박이 출항 할 때까지 선박에 억류 감시도록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선박 및 항만보안 실태

ISPS Code와 관련한 국내규정으로는 지난 2003년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고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정」과 「항만시설 보안시스템 이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ISPS Code의 이행을 위한 선박(회사) 및 보안관계기관의 역할·임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대상선박 및 선박보안

대상선박으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500톤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양구조물 등으로 대상 선박회사로는 62개선사와 81개 선박관리회사가 있으며, 대상선박 척수는 10월 현재 425척으로 국제항만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선박 및 선사가 선박보안을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이행사항으로 ① 선박보안장치(SSAS)의 설치, ② 회사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 지정과 회사보안책임자에 의한 선박보안평가 수행, ③ 불법무기, 위험물 등의 사용 및 선박운송 방지대책, 제한구역 식별 및 선박에 대한 불법접근 통제대책, 선박보안경보장치 위치확인 등 선박보안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 ④ 보안관련 활동기록, 관계자 교육 및 훈련실시, ⑤ 국제선박보안증서 비치, ⑥ 입항 24시간전 선박관련정보를 항만당국에의 통보 등이며, 이는 종전의 선박 안전운항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틀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사와 선박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였던 ISM Code에 비하여 훨씬 강화되었고 체계적인 보안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선박보안은 ISM Code에 따라 해적에 대한 예방, 밀항자 예방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 항만보안

대상항만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입항하고 있는 국내 28개 무역항이며 항만시설(Port Facility) 범위는 항만법상의 규정이 아닌 ISPS Code상 명시된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①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 ② 선박의 접근수로, ③ 묘박지, ④ 여객이 승·하선하는 지점에서 검색게이트 지점간 구역, ⑤ 화물이 적·양하되는 지점에서 게이트간 구역, ⑥ 필요시 보세화물 장치구역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SOLAS협약 제11-2장과 ISPS Code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의무 정책당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박보안은 안전관리관실에서 항만시설보안은 해운물류국에서 담당하고 보안에 관한 총괄업무는 안전관리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항만시설보안에 대한 현장관리 감독업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과장 및 관계부처 과장 14명으로 보안위원회를 구성하여 ①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등급 설정에 관한사항, ②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정책과 밀항대책에 관한 사항, ③ 해상보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있다.

한편, 항만보안관련 ISPS Code 시행의 주관청인 해

양수산부의 의무사항으로 ① 복수항만시설 보안수준 설정 및 입항선박에 대한 보안수준 정보제공, ② 항만시설 보안계획 수립대상 국제항만시설 지정, ③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교육 훈련실시, ④ 항만시설보안 책임기관명 및 연락처 등 IMO 통보, ⑤ 항만시설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등이 있다. 지정당국인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보안관련 의무 사항으로는 ① 안벽시설보안 책임자 지정, ② 항만시설보안 평가에 대한 검토 및 심사, ③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④ 외국선박 보안점검 등이 있다.

다. ISPS Code 관련 외국선박 입항통제 및 입항 거부요소

외국선박이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하고자 할 때는 24시간 전에 선박정보사항을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정보사항으로는 현재 설정중인 선박보안 등급, 선박제원, 적하물, 승선원 명부, 전 출항지 등이며 평일과 주간에는 지방해수청 항만통제전담부서(PSC)에서 접수 처리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방해수청 항만교통관제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서류상 검토결과 명백한 결함 발견시는 PSC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정보 접수후 당해선박의 입항으로 인해 항만시설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 1〉 각국의 ISPS-Code 시행 비교표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1. 국내수용 법률·고시 유무	○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규정 ('03.12.25) ○ 국제여객선, 500톤이상 화물선 ○ 내상 : 425척	○ 국제항해선박 및 국제 항만시설 보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04. 4. 13 공포)	○ 해상운송보안법(MTSA) ('02. 11. 25 공포)
2. 적용대상 선박		○ 적용 : 좌동 ○ 대상 : 약 200척 ○ 대상 : 약 10,000여척	
3. 선박보안 정보장치 (SSAS관련)	○ 수신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임무 - 자국선박 보안경보신호 접수시 선박운항지역 인근정부에 즉시 통보 - 당사국정부는 타국선박 보안경보 신호접수시 해당주관청 및 운항지 역 인근정부에 즉시 통보 ○ 통보방법 전화, 팩스, E-Mail 등	○ 수신기관 : 해상보안청 ○ 임무 : 좌동	○ 수신기관 : USC G ○ 임무 : 좌동

구 分	한 국	일 본	미 국
4. 항만시설 보안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주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 보안수준 설정 및 입항선박에 보안수준 정보제공 · 항만시설보안계획 수립대상 시설지정 · 항만시설보안 평가에 대한 검토 심사 ·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 선박보안심사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 외국선박 보안점검 실시 · 보안심사인력 회사보안책임자 등 교육·훈련 실시 · 선박·항만시설보안 책임기관명 및 연락처 등 IMO 통보 등 【항만시설주】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기관 : 담당기관 국토교통성·해상보안청·항만시설주 · 기관별 역할 【국토교통성】 · 선박이력기록부 발급 · 항만시설 보안수준 설정 및 정보 제공 · 항만시설보안계획 수립대상 지정 · 항만시설 평가에 대한 검토심사 ·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 선박보안심사 및 보안증서 발급 · 외국선박 보안점검 실시(접안 후) · 선박보안직원 연수(국내조치) · 선박·항만시설보안 책임기관명 연락처 등 IMO 통보 등 【해상보안청】 · 입항선박에 대한 보안수준 정보 제공 · 외국선박 보안점검 실시(해상) 【항만시설주】(민간전용, 자체, 공사)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 	USCG 전담

구 分	한 국	일 본	미 국
5. 항만국 통제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항만통제관의 SOLAS 규정에 의한 기준미달선박 검사에 선박보안관련 검사업무 추가	○ 담당기관 : 해상보안청 ○ 항만통제관의 SOLAS 규정에 의한 기준미달선박 검사에 선박보안관련 검사업무 추가	○ 담당기관 : USCG ○ 항만통제관의 SOLAS 규정에 의한 기준미달선박 검사에 선박보안관련 검사업무 추가
6. 입항선박 「선박보안정보」 통보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내용 - 외국·국내입항 선박은 입항전 해양수산부(입항지 해수청) 통보의무 - 통보내용 - 선박에 관한 상세정보	○ 담당기관 : 해상보안청 ○ 주요 내용 - 외국·일본입항 선박은 입항지 해상보안부서에 통보의무 - 통보내용 - 선박에 관한 상세정보 - 해상보안청 조치사항 - 통보내용 분석, 안전상 문제 검토 - 필요시 추가정보제공 요구 및 임검 ※ 거부시 입항금지 조치 ※ 미통보입항 혁위통보입항 →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 벌금	○ USCG 전담
7. 대응세력	○ 해경 특공·특기대(86명) - 인천해경 특공대(32명) - 기타 해경서 특기대(54명)	○ 특수경비대(60명)	○ 항만보안대(PSU) - 총 870명 6개팀 1개항만 145명

4. ISPS Code 관련 USCG 점검 및 평가사항

앞서 제3장 2절에서 미국은 자국의 해사보안법상 미국에 화물을 수출하는 외국항만이 테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미국 연안경비대(USCG)의 평가반이 방한하여, '04년 7월 19일부터 11일간 국내 ISPS Code 이행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세관, 국정원, 해경청, 한국선급 등)의 보안활동사항과 부산인천·울산·평택·군산 등 5개항의 보안상태를 시찰한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의 선박·항만보안정책 및 ISPS Code 이행정도, 각종 보안 관련 시설의 구비, 항만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시, 화물의 검색절차, 보안관계자의 교육 및 비상훈련 현황 등을 점검하였고 특히 점검기간중에 부산항 감만부두 한진 터미널에서 항만보안관련 유관기관간 합동‘해상테러대비 모의훈련’을 참관하였다. 당시 방문단장인 블레어씨는 훈련상황을 지켜 본 후 “훈련수준이 매우 높아 미국도 우리나라 훈련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타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Best Practices)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하였고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이 코드의 이행과 항만보안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주도국가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찰결과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음에 따라 ISPS Code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이 자체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미국 입항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항만보안의 주요내용과 기관별 역할

항만보안활동은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등 항만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보안위협 탐지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상호연계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ISPS Code 항만보안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6월에 마련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보안시스템 이행에 관한 세부지침」에 국가보안기관별 임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국가정보원

가. 불법행위 등 국가항만보안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나.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보협력체계 유지

다. 항만시설 보안, 대테러업무 기획, 조정 및 추진실태지도, 점검

라. 항만시설 및 선박 파괴 등 보안사고 전말 조사

마. 불법행위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 발전, 보안대책 제공 및 불법행위 대응 정보, 기술, 교육 훈련 등 지원

바. 항만시설의 설계, 건설, 개보수시 국가항만보안 대책 반영 여부 측정

2. 법무부

가. 항만시설 출입국심사지역에 대한 출입관리 및 관련 항만보안업무 지원

나. 항만시설 보안검색을 위한 위조, 변조 여권 등의 식별기법에 관한 업무지원

다. 불법방해행위와 연계된 혐의자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

라. 항만시설에서의 비상사태 발생시 관련 출입국 관리 업무 지원

3. 국방부

가. 항만시설내 생화학테러 및 폭발물 발견시 군 폭발물인 경우 군 폭발물 처리반(생화학 테러 일 경우 생화학 부대)에서 지원 협조하고, 사제나 민수용 폭발물인 경우 항만시설 관리자 및 경찰에서 처리 불가시 항만시설보안대책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의거 처리 지원 협조

나. 항만시설점거, 선박 납치 등 무장 테러범에 의한 상황발생시는 국가대테러 대책위원회 결정에 의거 군대테러특공대 및 장비투입 지원

다. 항만시설외곽(공해 포함) 경계 및 방호업무

라. 항만시설에서의 군인, 군무원 및 군 사용장비 등에 대한 검문

4. 농림부

가. 수출입 식물 검역에 대한 항만시설 보안업무 협조

나. 수출입 동식물 검역 장소 지정 및 관리

다. 수출입 동식물 검역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 관련 정보의 제공

5 보건복지부

가. 항만시설 보안 관련 검역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나. 선박 및 여객, 선원, 화물검역에 관한 사항

다.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세균학적 검사업무 지원

6 해양수산부(당사국 정부)

가. 항만시설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조사, 연구 및 유지, 관리

나. 항만시설 보안 관련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다. 항만시설 보안책임을 맡는 지정당국의 지정

라. 지정당국의 항만시설 보안업무에 관한 점검 및 현장조사

마. 항만시설 보안 관련 국제해사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업무

바. 항만시설 보안 관련 정보의 접수 및 전파

사.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의 지정

아. 항만시설 보안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

7. 관세청

가.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의 출입관리 및 관련 항만보안업무 지원

나. 묘박지를 포함한 항만시설에 대한 세관지역 감시업무

다.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 저지 대책수립, 이행

8. 경찰청

가. 항만시설을 위협하는 범죄 예방 및 대응조치

나. 항만시설에서의 선박 납치, 파괴, 폭탄 또는 기타 위협 등 불법행위 발생시 진압 및 사법조치

다. 항만시설의 주요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 및 특공대지원 업무

라. 불법행위와 연계된 출입국자의 체류동향에 대한 항만시설보안 관련정보의 제공 업무

제4절 ISPS Code 관련 해경의 임무 및 보안등급에 따른 활동

1. ISPS Code 관련 해경의 임무

가. 항만시설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나. 해상에서의 선박 납치, 파괴, 폭탄 또는 기타 위협 등 불법행위 발생시 진압 및 사법처리

다. 해양사고 구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라.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등이며

해양경찰은 해상테러의 주무기관으로서 평시 해상테러 예방활동에 주력하며, 상황발생시에는 해상대테러 종합대책 수립시행, 「해상대테러 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구성·운용, 특공대·협상팀·지원팀 구성 및 현장파견, 테러범 진압 등 처리 및 조사, 현장상황 종합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 등의 필요한 임무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고로 항만테러의 경우는 육상테러로 간주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경찰청이 주무기관으로서 대응토록 되어 있으며 해경은 해상경계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게 된다.

2. 항만 보안등급별 해경의 활동사항

항만보안등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시체제인 1등급, 경계태세인 2등급, 긴급태세인 3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설정은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항만보안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설정한다. 보안등급별 해양경찰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안 1등급(평시상황)

- 테러관련 정보수집 및 해상테러 대비 상황체제 유지
- 해상을 통한 테러분자 잠입 방지·색출 및 테러 위해 물품 반입저지
- 항만 및 국가 중요시설 주변해역 테러대비 경계 및 안전활동 실시
- 여객선 이용 승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휴대품 등 보안검색 실시

나. 보안 2등급(경계태세)

- 보안1등급 조치사항에 다음사항 추가

- 대테러 상황실 구성·운영으로 상황체제 유지
- 항만·국가중요시설 주변해역 경비함정 증가배치
- 특공대·특기대 비상출동태세 유지

다. 보안 3등급(긴급상황)

- 보안2등급 조치사항에 다음사항 추가
- 출입항 항로 및 취약해역 함정 및 항공기 순찰강화
- 해당 항만 3선 차단선 개념 경비정, 순찰정

증가배치

- 정보·수사·파출소요원 항만주변 테러정보수집활동 강화

제5절 선박보안의 주요내용과 SSAS 체계

1. 선박보안

선박보안 등급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국제여객선 및 500톤이상의 국제항해 화물선은 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선박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선박이 처할 수 있는 위협을 보안 3단계(평시수준, 경계수준, 비상수준)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합한 보안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보안 1단계는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보안 2단계는 보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안 3단계는 보안사고 발생이 임박한 경우에 요구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보안등급은 특정항로 및 특정국가로부터 보안위협정보를 입수하거나 기타 국내외 보안기관으로부터 국적선에 대한 테러정보가 입수되었을 경우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보안위원회(보안기관 포함)를 개최하여 선박보안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며, 보안등급의 소멸사유 발생시 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하향 조정토록 되어 있다.

2. SSAS 체계

IMO에서는 ISPS Code 규정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국의 ISPS Code 이행 주관기관은 선박보안경보의 수신체계를 갖추고 보안경보 수신시에는 피해선박이 항해중인 인근 연안국가에 신속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수신 지정기관으로 공동 등록되어 있다.

해양경찰은 테러피해 선박으로부터 경보발신에 대비하여 해경청 상황실에 보안경보 수신시스템을 설치, 24시간 수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경보 수신시 국정원, 선사 및 테러피해선박이 위치한 연안국가의 해상치안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HOT-LINE을 구축하는 등 국제항해 국적선의 테러발생시 구조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박이 외국해역에서 테러위협 등이 발생한 경우, 기국 또는 연안국과의 SSAS 연락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박경보장치(SSAS)는 선내 비밀장소에 설치되어 테러범 침입시 기국정부에 테러상황을 경보로 전파시 사용되며

나. 위성전화는 테러피해이전 또는 위협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용되는 수단으로서 인접국가와 소속회사에 전파시 사용되고

다. 팩스(FAX)와 이메일(E-mail)은 테러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이후 또는 테러범의 억류로부터 벗어났을 때 전파하는 수단이며

라. 항무통신망(VHF)-무선전화망(SSB) 등 기타통신장비는 연안국과 통달거리 영역내에서 필요시 사용하게 된다.

3. 선박테러발생 SSAS신호 수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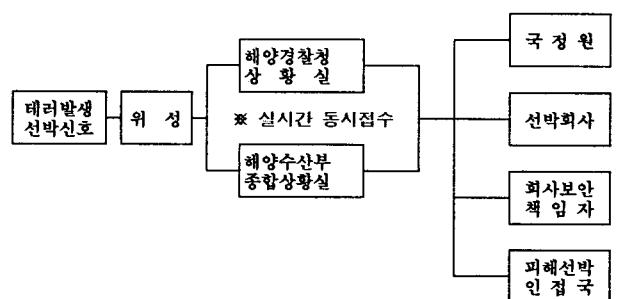
가. 전파 운용체계

국적선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발령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동시에 수신하게되며 해양수산부는 국정원 대테러상황실, 해운회사당직자, 보안책임자, 인접국 등에 통보하며, 해양경찰청은 수신내용에 따라 진압부대 현장투입, 유관기관 공조진압, 연안국 해상치안기관에 상황전파 등 해상대테러 주무기관으로서 조치와 임무를 수행한다.

나. 전파연락수단

선박보안경보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게 될 경우에는 주장치로부터 자료를 출력하여 전화, 팩스, E-mail 등을 이용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해당 전파처에 신속하게 송신하여 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표 2> SSAS 수신체계



4. 선박보안경보 수신시 해경·해수부 역할

국내항만 및 우리나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선박보안경보가 수신되었을 경우, 해양수산부는

국정원, 회사보안책임자 등 관계 기관 전파하고 해양경찰청은 국가대테러 조정기관인 국정원과 테러진압 관련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해상대테러 대책본부 및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대테러 위원회를 소집하여 테러진압 등 사건을 처리한다.

국외지역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는 연안국 SSAS 등록 연락처로 상황전파 및 구조요청을 하며,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국 SSAS 등록 연락처 및 해상치안기관에 구조요청 및 국제공조를 유지하며 해적사건과 관련한 경보발령인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와 인근 해상치안기관에 통보하여 구조협조를 요청한다.

제 4 장 해양경찰의 테러 대응 대책

제1절 테러로부터 해상안전확보를 위한 해경의 활동사항

1.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해상테러유형

국제테러분자에 의해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로는 유류저장시설, 원전 등 전력시설, 조선소, 제철소, 교량, 공항, 항만,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물 운반선, 여객선 등이 있으며, 대부분 국가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시설이자 테러가 발생되어 기능이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되는 경우 국가안보·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상물이 대부분이다.

해상테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여객선내에서의 화학/유독가스 방출 테러
- 나. 선박내 테러요원이 침입하여 승객인질 및 선내 폭발물 설치
- 다. 조류를 이용하여 폭발물을 이동시켜 목표물 충돌 폭파
- 라. 폭발물을 적재한 소형보트의 자살공격 테러
- 마. 해상 원유송유관 및 유류저장시설 폭파
- 사. 유조선 등 위험물수송선을 납치하여 항만시설과 충돌 폭파
- 아. 수중침투하여 선박의 선저 또는 시설물의 수중폭파
- 자. 반잠수정이용 취약해역 침투 후 목표시설 폭발물 투척 폭파
- 차.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거 및 폭파 등

2. 해상대테러 추진정책 및 주요 활동사항

가. 국가중요시설, 국제항만에 대한 해상대테러 경계 강화

- 순찰정, 고속보트, 경비함정, 항공기, 특공대를 테러 보호시설해역에 배치·경계 경비강화
- 항만·연안·영해권으로 3선경계선을 설정하여 경비 함정을 배치하고 육상 R/S 조기경보망과 항공순찰망의 공조 연계체계로 해·육·공 입체적 봉쇄경비체계 구축

※ 1선(보호시설해역) → 고속보트/순찰정

2선(항계외곽 ~ 연안) → 소형정

3선(연안 ~ 영해내) → 중·대형함정

나. 국내 여객선 터미널(22개소), 여객선(157척) 이용 승객 임검 및 휴대품 보안검색 강화

- 여객선 이용승객에 대한 신분증 및 화물 보안검색 강화
- ※ 여객선터미널에 임검경찰관 배치, 기소중지자 611명검거(3.12 ~ 10.31)
- 외국인 승선자에 대한 임검강화 및 정보관리체계 운용
- 문형 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차량검색경을 이용한 검색강화로 테러 위해물품 사전색출 등 반입차단 강화

다. 대테러 전문인력/장비 보강 및 대테러 전담부서 대테러계 신설

- 해경청 경비과 대테러계, 해경서별 대테러반 신설
- 특수기동대·특공대인력 확충, 전문인력 보강
- 공기부양정, 대테러장비 보강

라. 해상대테러 실무매뉴얼 제작 및 항만보안규정 발효에 따른 서별 항만보안활동 세부지침서 수립, 테러대응 기본지침서로 활용

- 해상테러 발생시 상황접수/전파 및 진압지휘 체계 등 관계기관간 지원·협력에 관한 임무 부여
- 자체 기능별 예방/대비, 대응활동 임무 등 책임·역할 부여

※ 28개 국제항만별 해경의 임무와 역할관련 종합대책수립 항만보안활동 강화

마. 해상대테러 경비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대비태세 확립

- 취약해역의 선정, 순찰시기, 순찰항로, 경비정 배치척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 테러대상시설물에 대한 시설주와 「대테러 실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7.27/부산)

바. 지역·관계기관과 유형별 대테러합동훈련 및 항만 방호훈련 실시

- 지역 유관기관과 해상테러 대응역량강화 및 역할분담에 대한 숙련을 위한 항만시설·선박별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26회)
- 해군·세관 등 관계기관과 역할분담 및 공조시스템 점검을 위한 지역별 항만 방호훈련 실시(41회)

사. 해상대테러관련 국제회의 실시로 주변국과 공조 강화

- 한·러 해상치안기관장간 정례회의(4.26 모스크바)
함정 교류방문, 대테러·구난 합동훈련 및 테러 등 범죄용의선박에 대한 정보교환에 대한 협의
- 한·일 해상치안기관장간 정례회의(6.14 동경)
특공대간 합동연수훈련 지속실시 등 협력강화, 해상테러, 해적사건 등 관련정보교류 강화
- 북태평양 6개국 회의(9.21 캐나다)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항만방호·대테러활동 합동훈련 등 발전방향 논의
·상호간 직접연락창구 개설 및 기본 지침 논의

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주변국과 해상대테러 합동 훈련 실시

- 한·일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4.1 / 대한해협)
·참가세력 : 함정 4척(韓 3, 日 1), 헬기 3대(韓 2, 日 1), 고속보트 2대
·모의훈련 : 실제 항해중인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테러범진압등 종합훈련
- 한·러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6.16 / 부산)
·참가세력 : 함정 4척(한2, 러2), 헬기 2대(한2), 고무보트 3대(한2, 러1)
·모의훈련 : 외항 화물선 대상, 테러범 진압·선박화재 진압

자. 해상대테러 전술능력 배양을 위한 특공대 전지훈련 및 교류연수 훈련 실시

- 해군 특수전여단(UDT) 전지훈련
·기간 : 5.10~5.21 / 진해 해군 특수전여단 / 20명
- 한·일 특공대 합동연수훈련
·기간 : 7.12~7.16 / 인천영종도 특공대 / 韓 : 20명, 日 : 11명

차. 해상보안규정(ISPS Code) 발효관련 항만테러 모의 합동훈련 실시

- 해수부주관 관계기관 항만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참가기관 : 해수부, 해경, 해군, 경찰, 육군, 세관, 소방서 등

·참가세력 : 함정 13척, 헬기 3대, 소방정 등
·모의훈련 : 해경, 경찰, 해군 특공대간 선박 / 항만테러 합동진압

카. 해상테러 대응시스템 구축

- 여객선 설계도면 전산화
- 평시 대상선박에 대한 전압훈련 실시로 여객선테러 발생시 진압요원의 선내침투·진압작전 용이 도모

타. 테러지원국(6개국) 선박 국내입항시, 전담경비정 배치 출항시까지 해상감시 강화 및 선원 상륙시 동향감시 강화

- 테러지원국가 이란선적 83척, 2,667명 감시(4.1 ~ 10.31)

※ 테러지원국가(6개국) :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북한

구 분	계	부산	인천	태안	군산	여수	포항	울산	통영
선 박	83척	29	6	1	1	29	2	14	1
승선원	2,667명	928	201	34	91	873	64	442	34

파. 항만관제실과 공조, 위험물수송선 등 외국선박 감시강화

- 국제테러조직이 위험물수송선을 납치, 국내항만에 대한 공격기도 등 테러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외항선박의 입항 예정 정보를 상시 파악, 위험물수송선 등 테러기도성 외국선박을 입항전 항제에서 통신검문 실시와 입항후 해수부와 합동 승선검색 실시

※ 외항입항선박 3,741척 검문검색('04.9.1 ~ 10.31)

- 12월부터 부산, 인천 등 주요항만관제실에 경찰관 합동근무체제를 추진하여 입항선박 및 인원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하. 위험물운반선, 여객선 항로상 경비함정 전진배치 호송경비

- 위험물 운반선 입항정보에 따라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여 호송경비를 실시하고 여객선 항로상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안전 호송 실시

거. 대테러 정보입수 활동강화와 유관기관 공조강화

- 정보, 형사, 과출소, 출장소 요원의 테러관련 정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 공조협력 체계를 강화

제2절 밀라카 해협 등 주요교통로에서의 해적 및 테러대책

1. 밀라카해협의 새로운 해적양상과 해상테러리즘 위협

해상 세キュ리티 문제 중에서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사건은 해상무역활동에 있어서 수백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해상테러 문제는 근년에 새롭게 출현한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양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장과 위협을 통해 선원에게 위협을 가하고 선적물을 탈취하거나 선박을 납치하는 점과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밀라카해협이 위치하는 동남아시아 해역은 해적사건이 빈발한 지역으로서 최근에 해적전문가 등은 밀라카해협을 통항하는 원유수송선, 동해협의 중요성 내지 전략적 시설인 석유화학공장이나 컨테이너항을 목표로 한 해상 테러사건의 절박한 위협에 대해 자주 경고하고 있어 해적문제에 더하여 해상테러사건 발생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9. 16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야는 밀라카해협을 항해중인 LNG운반선 등 위험물수송선을 탈취해서 싱가폴, 한국, 일본의 주요항만에 대한 테러 공격기도를 경고한바 있다.

밀라카해협에 있어서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단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 요인이 존재한다. GAM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대항세력의 멤버가 분리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적, 무기밀수, 해상테러 등 범죄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해상테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해역에서는 발생한 바가 없지만 최근에 알카에다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마 이슬라미야의 구성원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체포되고 있어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상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해적사건의 유형을 보면 선원의 소지품을 탈취하는 경미한 사건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통째로 납치, 실종되는 흉악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목적, 범행수법, 사용무기의 종류도 다종다양하다. 밀라카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테러활동은 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다.

분류 1 : 묘박종 또는 항해중인 선박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행위

분류 2 : 중요 전략시설인 콤비나트나 컨테이너항만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행위

분류 3 : 중요한 국제 씨-레인으로서의 해협 기능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행위

2. 해적사건 발생현황

밀라카 해협은 세계 총 물동량의 25%에 해당하는 5만여 척 이상의 각 국 商船들이 통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량의 99%, 석탄 가스류 83%, 국내 수출입물량 35%를 운송하며, 연간 2,000여회 이상의 상선이 통항하고 있다.

밀라카 해협은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상선들이 불가피하게 저속운항하는 점을 이용하여, 소형 고속보트에 자동소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 해적들이 선박을 습격하고 있다. 표3은 연도별 해적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연도별 해적발생

구분	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전체발생	3,265	106	103	90	188	228	247	202	300	469	335	370	445	182

그동안 해적 피해실태에 대한 해적신고센터(PPC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소재)의 통계에 의하면 '93년부터 04. 6월까지 전 세계 해적 발생 건수 3,200여건 중 약 20%인 560건이 밀라카해협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해적피해는 '93년이후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나, 신고에 따른 船社 이미지 손상, 수송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사유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나타나지 않은 선박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4> 밀라카해협 인근해역별

	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계	1,221	58	15	32	42	67	56	72	149	220	134	138	156	82
인도네시아	877	49	10	22	33	57	47	60	115	119	91	103	121	50
밀라카해협	179	7	5	3	2	3		1	2	75	17	16	28	20
말레이시아	112	2		4	5	5	4	10	18	21	19	14	5	5
싱가폴해협	53			3	2	2	5	1	14	5	7	5	2	7

<표 5> 국적선 해적피해

년도	합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건수	10	1	2	0	0	0	1	0	1	0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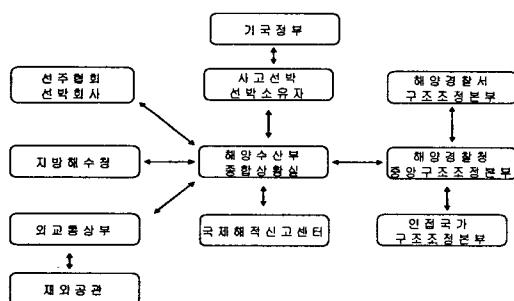
3. 해적신고 및 대응절차

해적이 발생하면 피해선박에서 해적신고센터(Piracy Reporting Center, PRC)에 신고를 하게 되며, 해적신고센터는 인근 해상치안기관에 전파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연안국 해상치안기관은 인근 경비함정에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적신고센터는 선주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피

해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피해국에도 통보를 하게된다. 직접적인 대응은 발생 지역 해상치안기관이 하지만, 피해국에서는 외교적 경로나 해당국 해상치안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대응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신고센터에 접수된 해적사건은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전파되고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나 선사 등에 전파되어 대응을 하게된다.

【해적대응체계도】



4. 말라카 해협 인근국가의 대응

말라카 해역 3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에서는 상대국가의 영해침범 우려와 첨단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적극적인 해적단속에 나서지 않았으나,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9·11 공중테러에 이어 걸프만에서 잇따라 해상테러를 자행하자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걸프만과 함께 세계 최대의 원유 해상수송로인 말라카해역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인 제마 이슬라미비야(Jema Islamibia) 등 테러집단들이 알카에다 등과 연계한 해상테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를 함에 따라 '04년 6월부터 말라카해협 3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에서는 경비함정 17척을 협력순찰(coordinated patrol)대로 편성하여 자국해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3국의 군함이 해적 추적시 타국의 영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해적대응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99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선주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해적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1~2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적피해 방지대책 책자발간 및 선원, 해기사에 대한 해적피해 대응요령 교육과 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지원 등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적피해 대응 및 방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말라카 해협과 거리상의 문제로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피해를 당할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이 불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말라카 인근국과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말레이시아(01. 9), 필리핀(03. 11), 인도네시아(03. 12), 싱가폴(04. 8) 해상치안기관과 해적대응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10.10 ~ 10.14까지 3,000톤급 경비함정과 헬기, 특공대를 현지에 파견하여 말레이시아 왕립해양경찰과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말라카해협 3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과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해적 발생시 신속한 정보교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해상치안기관 상황실간 HOT-LINE을 설치하는 한편, 싱가폴 주재관 파견을 추진하는 등 국제테러 및 해적대응에 적극적인 역할과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말라카해협 뿐만 아니라 필리핀근해의 바시해협, 그리고 중동의 호르무즈해협 인근국과도 해적대응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국적선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제3절 외국인 노동자의 감시강화

알카에다의 한국에 대한 테러공격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우리나라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노동자 형태로 중소기업 등에 위장취업하거나 불법체류하면서 국내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되고 있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1997년 알카에다 조직원이(니자르 나와르)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장에 불법취업하였다가 98년 3월 폭행사건으로 강제출국된 뒤 2002년 4월 튀니지의 유대교회당에 천연가스를 실은 트럭을 몰고 자살테러를 자행, 50여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000년 3월에는 헤즈볼라 조직원의자가 국내에 입국해 전국일원의 공중전화를 통해 레바논 소재 헤즈볼라 공작사무소와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도 입수된 바 있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도 지난 6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간부 리오넬듀몬용의자가 일본 니가타市에 은신해 있다가 동용의자와 관계가 있는 방글라데시, 인도국적 관련자 4명이 당국에 검거되었다. 용의자중 한 사람은(방글라데시국적 아프메드 파이잘) '97. 1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출국하여 불법잔류자가 검거되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이슬람 힘) 제마 이슬라미야와 관계되는 용의자로 요코스카 미군기지 앞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미군 공작 거점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당국에 의해 파악되었다. 그동안 대테러 주관기관에서는 "국제테러분자의 국내 입국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테러분자 신원자료집'을

국제공항과 재외공관에 발간·배포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로 위장 취업해 있거나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동계 혹은 아시아 이슬람계 노동자에 대해서 국제테러조직과의 연계 등에 대한 동향 관찰, 실태파악 및 특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특이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테러가능성에 유의하여 특별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에서는 해양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향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테러의 상황전개는 조직의 대의명분과 주장을 선전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충격적인 대형사건을 유발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노리고 있다.

대체로 테러범들의 요구사항은 국가의 중요정책 포기요구, 동료 테러범 석방, 안전탈출을 위한 항공기 등 교통수단 제공, 거액의 테러자금 제공 등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테러는 발생한 후에는 이미 해결이 어렵고 진압 과정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수반된다. 따라서 테러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소 잃고 와양간 고친다.’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은 용인될 수 없다.

현재 해상분야의 테러대비 실태는 공항이나 철도 등 육상에 비해 인력과 장비,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ISPS-Code 발효이후 선박항만의 보안체계가 개선보완되고는 있지만 최근에도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여성들이 항해중인 선박의 화물창고 등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몇 차례 발생되었고, 항만 출입자와 출입차량의 보안검색에서도 미흡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식 보안울타리 설치, 조명등 증설을 통한 야간감시 사각지대 해소, CCTV 설치를 통한 항만내 감시기능 보강 등 항만 보안시설을

보강하고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강화와 X-RAY 투시기 등 검색장비의 증강설치로 항만 출입자, 차량의 출입통제 강화 등 보안검색대의 효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중요 항만을 출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보안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는 등 심사강화와 항만국 통제(PSC)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테러전담기관의 진압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테러전문 협상요원도 별도로 양성해야 할 것이며 해상테러 관련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팀워크구성과 역할분담 능력향상 및 협조·공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테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늦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보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며, 테러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지도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예방은 국가와 회사, 전 국민이 모두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사전차단이 가능하리라 본다.